

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9.

제출자 : 목포시장

1. 개정이유

- 목포시의회 사무국으로부터 각기관 및 사회단체 행사 등과 관련하여 축고사 작성, 특별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 지원, 시의회 홈페이지 개통, 의장수행비서 상향조정 요청에 따라
- 시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기관별 정원조정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023명(△2)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21명(⊕2)
- 직급(직렬)별 정원조정 내역
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025명 ⇒ 1,023명
 - 행정7급 △2, 전산8급 △1, 행정8급 ⊕1
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9명 ⇒ 21명
 - 행정7급 ⊕2, 행정8급 △1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4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5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

6. 관련 부서의견

- 목포시의회 사무국 조직진단결과 인력 증원요청
 - 목포시의회 13130-200(2003. 4. 30)

7. 예산상황 : 해당없음

8. 입법예고 : 생략

9. 사전협의(승인사항) : 해당없음

10.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목포시 조례 제 호

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중 집행기관의 정원 “1,025명”을 “1,023명”으로 하고,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“19명”을 “21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
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 (생략) 제2조 (본문 생략)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025명</u>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<u>19명</u> 제3조 (생략)	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 (현행과 같음) 제2조 (본문 현행과 같음) 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023명</u> 2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<u>21명</u> 제3조 (현행과 같음)